

# 附 錄

- 서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 107
- 서산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 ..... 108
- 서산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  
운영조례중개정조례 ..... 109
- 서산의회회장규정 ..... 110
- 서산군의회포상규정 ..... 112
-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115
- '93채무부담승인내역 ..... 128
- '92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승인내역 ..... 128

## 서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설치조례

서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10-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지방의회의원, 전문분야 교수, 서산군의 관계 과장급 공무원과 지역 대표등으로 구성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 5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